

# 목 차

주주총회소집공고.....	1
주주총회 소집공고.....	2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3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3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3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4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5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	6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6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6
III. 경영참고사항 .....	7
1. 사업의 개요.....	7
가. 업계의 현황 .....	7
나. 회사의 현황 .....	8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12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의 승인.....	12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선임.....	78
<input type="checkbox"/>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	79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79
※ 참고사항.....	79

# 주주총회소집공고

2018년 2월 26 일

회 사 명 : 롯데케미칼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교현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전 화)02-829-4114  
(홈페이지)<http://www.lotteche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 (성 명)조성택  
(전 화)02-829-4035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2기 정기)

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제542조의 4와 정관 제19조에 의거 제42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8년 3월 19일(월),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31층 오디토리엄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나.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제42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

제3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2명)

제4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 등 관련법규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사항 및 의결 권대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lottechem.com>) 와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참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참석>

- 개인주주 : 위임장(주주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주주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 위 사항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케미칼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김 교 현

#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박경희 (출석률: 93%)	김철수 (출석률: 100%)	김윤하 (출석률: 100%)	박용석 (출석률: 86%)
찬 반 여부						
제1회	2017.01.18	제1호 의안 : 미국 에탄크래커 및 EG사업 관련 LC USA와의 금전대차 계약 체결 (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LC UK 차입금 지급보증(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사)대한스키협회 및 아시아소사이어티코리아센터에 대한 기부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제2회	2017.02.02	제1호 의안 : 제41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제41기 영업보고서(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최대주주등과의 거래총액 승인(안) 제4호 의안 : 특수고무 합작사업의 사업추진을 위한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사)대한스키협회에 대한 기부금 승인(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3회	2017.02.21	제1호 의안 : 롯데글로벌로지스 투자구조 변경(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롯데첨단소재와의 거래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자기주식 처분(안)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2017년 임원 승진(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4회	2017.02.28	제1호 의안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 제3호 의안 : LC UK 차입금 지급보증(안)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재단법인 롯데문화재단에 대한 기부금 승인의 건 <보고사항> 2016 사업년도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Jurong Aromatics Corporation 자산 인수 참여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5회	2017.03.24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임원 보수규정 개정 및 2017년 대표이사 보수 확정(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미국 에탄크래커 및 EG사업 관련 LC USA와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안)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6회	2017.03.31	제1호 의안 : LC Titan의 당사 지분비율 변동에 대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겸임(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7회	2017.4.7.	제1호 의안 : LC상강 지급보증한도 증액(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겸임(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공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제8회	2017.05.10.	제1호 의안 : 여수 PC #2 증설(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Meta-Xylene 공장 증설(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9회	2017.06.12.	제 1호 의안 : 롯데케미칼 본점 소재지 이전(안)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특수고무 합작법인의 사업추진을 위한 유상증자 참여승인의 건 제 3호 의안 : 2017년 회사채 발행 (안) 승인의 건 제 4호 의안 : LC USA 지급보증 수수료 계약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의 건 <보고사항> Share Pledge ->Negative Share Pledge 변경 보고(LC USA 차입금) 수처리 사업 추진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10회	2017.06.27.	제 1호 의안 : 이사회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 기부금 증액(안)승인의 건 제 3호 의안 : 2017년 재산종합보험 갱신(안)승인의 건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11회	2017.09.18	제1호 의안 : LC UK 매출채권 할인한도 지급보증(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POE 프로젝트 EPC 업체 선정(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울산1공장 MVR 잉여시스템 (주)한주 판매 계약 체결(안)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계열사간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추진(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12회	2017.09.27	제1호 의안 : 브랜드 사용 및 사용계약 체결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경영자문 및 경영지원 용역계약 체결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13회	2017.11.16.	제1호 의안 : 롯데월드타워 내 임시 사무실 임대차 계약 체결(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14회	2017.12.18.	제1호 의안 : 2018년도 경영계획(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2018년도 운영자금 한도(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특수관계인과의 퇴직연금 적립(안)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차량 광고(안)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HC2 프로젝트EPC업체 선정(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장 박경희 위원 김철수 위원 김윤하	2017.02.28	<부의사항>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서 2. 내부회계관리제도 2016 사업연도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서 3.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서 <보고사항> 2016년 검토 결과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전원참석 전원찬성 가결
	위원장 박경희 위원 김철수 위원 김윤하	2017.06.12	<부의사항> 1)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 박경희 위원을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보고사항 1) 2017년 1/4분기 검토 보고	전원참석 전원찬성 가결
	위원장 박경희 위원 김철수 위원 김윤하	2017.09.18	2017년 제3차 감사위원회 1. 보고사항 1건 1) 2017년 2분기 검토 보고	-

			(한영회계법인)	
	위원장 박경희 위원 김철수 위원 김윤하	2017.11.16	2017년 제4차 감사위원회 1. 보고사항 1건 1) 2017년 3분기 검토 보고 (한영회계법인)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 허수영 위원 김철수 위원 박용석	2017.02.21	제1호의안 :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사외이사 후보자 : 박경희)	전원 출석 전원 찬성
내부거래 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위원 박경희 위원 김윤하 위원 이자형	2017.02.02	특수고무 합작법인의 사업 추진을 위한 유상증자 참여 승인(안)	전원 출석 심의함
	위원장 김철수 위원 박경희 위원 김윤하	2017.05.10	2017년 제2차 내부거래위원회 1. 부의사항 1건 1) LMP Project EPC 업체 선정의 건	전원 출석 심의함
	위원장 김철수 위원 박경희 위원 김윤하	2017.06.12	부의사항 1) 특수고무 합작법인의 사업추진을 위한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2) 여수 경관녹지 개발사업 관련 롯데건설과의 수의계약 체결의 건	전원 출석 심의함
	위원장 김철수 위원 박경희 위원 김윤하	2017.06.27	부의사항 1) 재산종합보험 갱신(안)	박경희 위원 불참 심의함
	위원장 김철수 위원 박경희 위원 김윤하	2017.09.18	2017년 제5차 내부거래위원회 1. 부의사항 2건 1) POE 프로젝트 EPC 업체 선정의 건 2) 케이피캠텍 PTA 공급 계약의 건	전원 출석 심의함
	위원장 김철수 위원 박경희 위원 김윤하	2017.09.27	2017년 제6차 내부거래위원회 1. 부의사항 1건 1) 지주사 전환 관련 내부거래 심의 건	전원 출석 심의함
	위원장 김철수 위원 박경희 위원 김윤하	2017.12.18	2017년 제7차 내부거래위원회 1. 부의사항 2건 1) 특수관계인과의 퇴직연금 적립 2) 차량광고 승인의 건	전원 출석 심의함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고
사외이사	4	39,000	264	66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 1. 사업의 개요

##### 가. 업계의 현황

###### 1) 산업의 특성

석유화학산업은 나프타와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등의 올레핀제품과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의 방향족계 제품 및 이들 기초유분을 원료로 하여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등 각종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기초소재 산업으로 자본집약적 대규모 장치 산업입니다.

###### 가) 기초유분 부문

기초유분 제품은 납사 분해설비를 통해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C4유분, 벤젠, 톨루엔 등의 제품과 M-X를 원료로 하는 P-X 등의 제품을 말합니다. 이 제품을 다시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의 폴리머 제품과 스타이렌모노머(SM), 부타디엔(BD), 에틸렌글리콜(EG), 고순도 이소프탈산(PIA), 고순도테레프탈산(PTA) 등의 모노머 제품의 주원료로 사용하며, 잉여제품 및 부산물 등을 판매합니다.

###### 나) 모노머 부문

모노머 제품은 납사 분해설비를 통하여 생산되는 기초유분을 원료로 생산되는 액체상태의 제품입니다.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기타 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며, 탱크로리와 선박을 이용하여 주로 화학업체에 판매 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시황은 수요와 공급 외에도 유가, 나프타 가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 다) 폴리머 부문

폴리머 제품은 기초유분을 원료로하여 생산되는 고체상태의 제품이며 주로 플라스틱 가공업에 사용되는 원료입니다. 합성수지는 가공을 통하여 생활용품, 포장재, 산업재, 가전제품, 자동차부품 등 다양한 산업에 필요한 원료로서, 모노머와 마찬가지로 나프타 가격과 경기변동에 따라 시황 변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 2) 업계 현황

현재 Tight한 제품 수급상황으로 주요 올레핀 제품(PE/PP)의 강세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마진의 레벨 자체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됨. 이는 에틸렌 증설이 제한적인 향후 3년 정도 지속 가능 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 3) 산업의 성장성 및 경기변동의 특성

석유화학산업은 전방산업(전기, 전자, 자동차, 기계 등)에 기초소재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매년 글로벌 에틸렌 수요는 약 5~6백만톤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석유화학산업의 사이클은 9 ~ 10년 정도이며,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GDP 성장률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4) 경쟁요소

범용제품 위주로 되어 있는 기존의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규모의 경제와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경쟁요소이며, 점차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로 제품생산 기술과 품질 경쟁력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5) 자원조달상의 특성

석유화학산업은 에탄계 가스원료나 나프타를 기초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중동 등의 산유국에서는 에탄계 가스원료의 사용 비중이 높지만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은 기초원료로 거의 전량 나프타를 사용하고 있는 바, 기초원료인 나프타는 국내의 정유업체나 해외에서 수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나프타의 수급이나 가격, 원유가, 환율 등에 따라 경쟁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1970년부터 한시적으로 제정/시행해 오던 '석유화학공업 육성법'이 1986년 '공업발전법'의 발효로 폐지됨에 따라 투자 자유화의 여건이 조성되었으며, 1995년 이후 설비투자가 완전히 자유화되어 업계자율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 나. 회사의 현황

###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 (가) 영업개황

2017년 세계 석유화학산업은 중국의 자급률 상승으로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에틸렌 신증설과 타이트한 제품 수급 및 폴리에스터 체인의 수익성 개선으로 인한 실적개선을 이루었습니다.

#### 가) 모노머 부문

EG 2017년 시황은, 중국 폴리에스터 수요는 당초 예상치를 훨씬 상회한 11% 수준 성장한 반면, 공급 측면에서는 2분기 아시아지역 EG Maker들의 정기보수, 3분기 인도 릴라이언스(Reliance)社의 신규 설비 가동 지연 및 미국 허리케인 등에 따른 공급 차질로 수급 상황 호전되며 시장가격 급등하였고 이로 인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수익성이 개선되었습니다.

EOA의 경우, 2017년 국내외 콘크리트 감수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시황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BD의 경우, 2017년 1분기 역내 T/A 집중 및 유도품 수요건조, 투기성구매 증가로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2분기에는 유도품 업체 채산성 악화로 급락하였습니다. 3분기부터 저점인식 및 수요회복으로 가격이 다시 상승하였으며 4분기 들어와 미국/유럽 Deep-sea 물량 대량 유입으로 약세 분위기였습니다.

SM의 경우, 2017년 1분기 미국 업체 Trouble 장기화로 역내외 가격이 급등하였고, 2분기 중국 SM업체 고율가동 및 중동산 유입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3분기에 들어와 미국 허리케인 영향 및 ABS 등 유도품 호조로 가격이 반등하였으며, 4분기 중국 Qingdao Soda 증설 지연 및 가수요 지속에 따른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 나) 폴리머 부문

2017년 폴리머 부문은 유가, 납사가 등 원료가의 불안정성, 국내외 영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수익이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 PE 할당관세의 무관세 정책으로 인한 저가의 수입품 증가, PP 국내 증설 물량의 본격적인 공급 및 내수 경기 침체 따른 수요 위축은 내수 수익 하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국외 시장의 경우 중국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 조치 및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Harvey 영향에 따른 제품 공급 제한 등으로 일시적인 회복세를 보였으나, THADD 배치 따른 중국과의 외교 문제 및 중국 수요 약화, 미주 Shale Gas 기반의 저가 제품 출현 등으로 수출 판매 또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시장 신증설로 인한 폴리머 제품의 공급 증가 및 세계 경제 침체의 장기화가 지속되고 있어 폴리머 제품의 수익 악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중국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역외로의 판매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신규 업체를 꾸준히 개발하여 판매 유통 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안정적 판매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범용 제품의 안정적 판매 뿐만 아니라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신제품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모델을 구축해 갈 것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 및 종속회사의 사업부문별 현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대상회사	주요생산품목	주요고객
기초 유분	롯데케미칼(주),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Berhad (말레이시아), Lotte Chemical USA Corp.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톨투엔, 파라자일렌, 올소자일렌 등	국내 제조업체 및 국외 제조업체
모노머 부문	롯데케미칼(주),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Berhad (말레이시아), Lotte Chemical (Jiaxing) Corp.(중국),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파키스탄), LCUK(영국), Lotte Chemical USA Corp.	스타이렌모노머, 부타디엔, 에틸렌옥사이드에덕트, 에틸렌옥사이드글리콜, 고순도이소프탈산, 고순도테레프탈산,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등	국내 제조업체 및 국외 제조업체
폴리머 부문	롯데케미칼(주), 롯데첨단소재(주),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Berhad (말레이시아), 삼박엘에프티(주), 데크항공(주), Lotte Chemical Trading(Shanghai) Corp.(중국),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Jiaxing) Co., Ltd., LCUK(영국), (주)KP켄텍, Lotte Chemical Alabama Corp.(미국),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Hefei) Co., Ltd.	고밀도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저밀도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폴리카보네이트, ABS, EPS, LFT, EPP 등	국내 제조업체 및 국외 제조업체
기 타	롯데케미칼(주), 케이피켄텍(주), 데크항공(주),	임대사업, 파견 용역 등	

(2) 시장점유율

(단위: 천톤)

주요제품	당사 CAPA'	주요경쟁사 CAPA'		비 고
HDPE	680	대한유화	530	-
LLDPE	300	한화케미칼	355	-
PP	1,100	폴리미래	700	-
EG	1,130	LG 화학	180	-
PTA	600	한화종합화학	2,000	-
PX	750	S - OIL	1,800	-
PET	520	TK 케미칼	280	-
ABS	560	LG화학	850	
PC	350	LG화학	170	

주1)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자료 참조

주2) 상기 자료는 국내 사업장 기준임

### (3) 시장의 특성

합성수지 및 합섬원료 등의 제품을 가공성형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외 가공성형업체를 주시장으로 하여 판매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석유화학의 기초원료인 나프타의 수급 및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화학산업은 대표적인 보통재(Commodity) 산업으로 경기변동형(Cyclical) 및 Globalized된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 석유화학산업이 경기변동을 갖게 되는 주요 원인은 수요·공급 상황에 있습니다. 제품별 수요의 증가량과 생산능력의 증가량 사이에는 반복적인 불일치가 발생하기 쉬우며 수요 증가량에 비하여 공급량이 작을 때는 산업의 수익성이 상승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하락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또한 석유화학산업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경쟁 요소 보다는 Global 산업환경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석유화학산업이 최종 제품이 아닌 재료를 공급 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지역간에 운임 등을 고려한 가격 차이 이외에는 제품 물성 등에서 차별화 하기 어려운 보통재 산업의 특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또한 석유화학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의 하나이므로 이로 인해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쉽지 않으며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가) 기초유분 부문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인 Titan에서 납사를 주원료로 하는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톨루엔 등의 기초유분 제품과 M-X를 주원료로 하는 P-X, 벤젠 등의 기초유분 제품을 생산하여 대부분 당사의 모노머, 폴리머 제품의 주원료로 사용하며 잉여제품 및 부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나) 모노머 부문

모노머 제품은 기본적으로 제품물성의 차별화가 어려운 제품으로 순도 등의 일정한 물리적 특성을 만족시키면 가격과 납기가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노머 제품은 대부분 액체 제품이 많아 운송 및 저장이 자유롭지 않고, 특히 에틸렌과 부타디엔 등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압력과 온도 유지를 위한 특수 설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 지역간 가격 차이가 커질 수도 있고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모노머 제품은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가 매우 중요하여 폴리머 제품에 비해 장기 계약 등으로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 폴리머 부문

폴리머 제품은 모노머(단량체)를 중합하여 생산하는 제품으로 대부분 펠렛 또는 파우더 형태의 고체 제품입니다. 당사는 석유화학산업의 대표적인 폴리머 제품인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카보네이트(PC)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폴리머 제품은 일반적 석유화학 제품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모노머와 달리 제품에 다양한 Grade가 존재하여 실질적으로는 다른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제품은 그 용도에 따라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고, 가격도 시장 내에서 다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노머 제품에 비해 운반과 보관이 용이하여 전세계로 수출이 가능하며 재고 운용의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제품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여, 일부 범용 제품을 제외하고는 단순한 가격 경쟁으로 시장을 확보

하기는 쉽지 않으며 고객의 Needs 및 용도를 만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경쟁 요소입니다. 사회가 발전해 감에 따라 고객의 Needs는 더욱 다양해지고 수준이 높아 지고 있으며, 그런 시장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미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4) 신규사업의 내용과 전망

##### ① 특수고무 합작사업

이탈리아 국영석유회사인 ENI S.p.A의 100% 자회사인 Versalis S.p.A와 고부가 합성고무인 SSBR, EPDM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합작회사(LOTTE Versalis Elastomers Co., Ltd.)에 투자하는 사업임.

- 투자목적물 : SSBR(LCBR 병산) 및 EPDM 생산설비
- 사업위치 : 한국 여수
- 주요제품 : SSBR(Solution Styrene Butadiene Rubber), LCBR(Low-Cis Butadiene Rubber),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Terpolymer)
- 당사 투자금액 : 1,375억원(지분율 : 50% + 1주)
- 투자기간 : 2013년 ~ 2017년
- 예상효과 : 기 추진 중인 말레이시아 BR사업과 함께 고부가 합성고무인 SSBR(LCBR 병산), EPDM 사업 진출로 당사 고무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시장의 주요 특성, 규모 및 성장성: SSBR은 에너지 소비율이 낮으면서도 내구성이 높고 안전한 친환경 타이어 제조의 핵심소재이며, 타이어 라벨링 제도 도입 추세 등을 고려 시, SSBR 시장이 ESB(Emulsion Styrene Butadiene Rubber)시장을 대체함으로써 고성장이 예상됨. EPDM은 내오존성, 내후성, 내열성 등이 뛰어나 각종 산업용 부품 소재로 사용되는 특수고무로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 및 인도 등 아시아 고무시장에 주로 공급될 전망이다.

##### ② 미국 에탄 크래커 합작사업

미국 셰일가스 기반 에탄크래커 설비투자를 위해 롯데케미칼과 美 엑시올社와 90:10의 지분 투자를 통해 합작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중. 해당 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저가의 에틸렌을 활용한 에틸렌글리콜 사업을 당사와 일본 미쓰비시 상사의 70:30 합작으로 검토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당사 단독으로 에틸렌글리콜 사업을 추진 중임.

- 투자목적물 : 에탄크래커(에탄을 원료로 하여 에틸렌생산), 에틸렌글리콜 생산설비
- 사업위치 : 미국 루이지애나주
- 주요제품 : 에틸렌(연산 100만톤), 에틸렌글리콜(연산 70만톤)
- 총사업비 : 약 USD 31억
- 당사 투자금액 : 약 USD 7.7억  
(자회사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Berhad. 투자금액 USD 5.1억 미포함)
- 투자기간 : 2014년 ~ 2018년(2019년 상반기 상업생산 예정)
- 예상효과 : 상업생산 이후 연간 매출은 약 15억불로 예상되며, 원료, 생산기지 및 판매지역 다변화를 통해 당사의 장기적인 경쟁력 향상과 실적 안정화 효과가 예상됨.
- 시장의 주요 특성, 규모 및 성장성 : 에틸렌 제품가격은 주 원료인 원유기반 납사의 가격에 연동되어 있어, 저가 에탄 기반 에틸렌 제조 업체가 납사기반 에틸렌 제조업체 보다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에틸렌글리콜은 최대 수입국인 중국을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③ 에틸렌 공장 증설 사업

여수 에틸렌 공장을 에틸렌 연 20만톤(100만톤→120만톤), 프로필렌 연 10만톤(52만톤→62만톤) 증설하는 사업임.

- 투자목적물 : 에틸렌, 프로필렌 증산설비

- 사업위치 : 한국 여수

- 주요제품 : 에틸렌(Ethylene), 프로필렌(Propyle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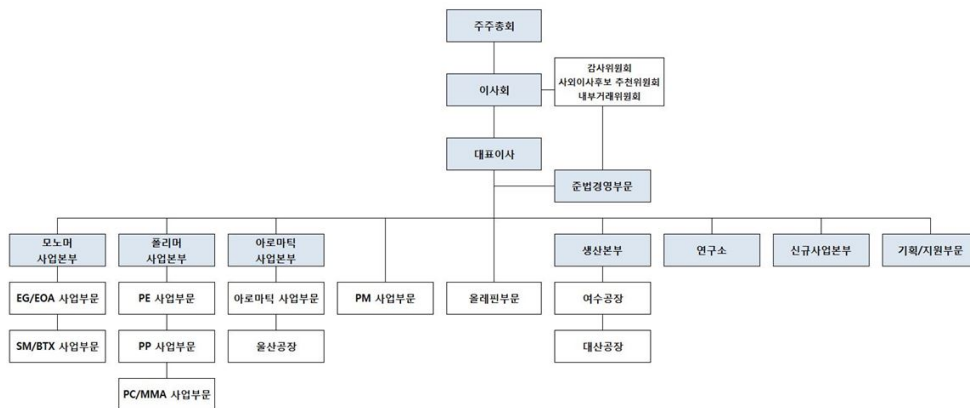
- 총사업비 : 2,530억원

- 투자기간 : 2016년 ~ 2018년

- 예상효과 : 2019년부터 연간 5,000억원의 매출증대 예상. 롯데케미칼의 이번 에틸렌 공장 증설은 전통적인 석유화학원료인 납사가 아닌 C3LPG(프로판 가스)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우즈벡의 천연가스 및 미국의 셰일가스에서 생산되는 에탄을 이용한 석유화학공장과 함께 원료 다변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한국/중양아시아/동남아시아/북미까지 확대된 생산 기지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될 전망이다.

-시장의 주요 특성, 규모 및 성장성 : C3LPG(프로판가스) 등 다양한 원료 기반 크래커 증설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는 아시아 에틸렌 수급은 타이트한 상황임. 롯데케미칼은 에틸렌 증설을 통해 하류 공장으로서의 안정적 원료 조달 및 생산 능력 증대를 통해 지속적 성장 기반을 마련 할 것임

(5)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람.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현금흐름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42(당) 기말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 41(전) 기말 2016년 12월 31일 현재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42(당) 기말		제 41(전) 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8,225,469,338,408		5,851,675,895,722
1. 현금및현금성자산	42	1,685,211,989,030		2,202,944,465,224	
2. 단기금융상품	4	3,086,656,512,787		425,756,558,256	
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6	2,434,730,122		6,685,073,198	
4. 매도가능금융자산	7	100,046,195,000		20,588,275,000	
5.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41	1,667,550,760,928		1,551,920,459,156	
6. 재고자산	9	1,535,989,483,699		1,477,157,254,043	
7. 금융리스채권	10	138,598,084		138,598,084	
8. 당기법인세자산		15,381,900,865		16,403,225,181	
9. 기타금융자산	8,23	19,507,537,143		13,242,873,191	
10. 기타유동자산	11	112,551,630,750		136,839,114,389	
II. 비유동자산			11,325,501,762,242		10,015,158,274,179
1. 장기금융상품	4	67,512,500,000		67,515,500,000	
2. 매도가능금융자산	7	255,241,155,482		304,235,250,235	
3. 금융리스채권	10	2,888,357,916		3,014,310,692	
4. 관계기업투자	12	1,438,963,136,291		1,288,114,096,686	
5. 공동기업투자	13	945,616,486,554		848,082,771,318	
6. 유형자산	15	6,716,184,181,432		5,546,663,157,027	
7. 투자부동산	16	114,606,808,510		99,471,563,871	
8. 영업권	17	723,796,856,918		723,796,856,918	
9. 기타무형자산	18	986,777,410,423		1,068,600,007,244	
10. 기타금융자산	4,8,23	20,253,421,140		20,898,712,615	
11. 기타비유동자산	11	15,230,234,510		5,552,909,940	
12. 이연법인세자산	36	38,431,213,066		39,213,137,633	
자 산 총 계			19,550,971,100,650		15,866,834,169,901
부 채					
I. 유동부채			3,790,891,299,787		3,448,810,302,356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9,41	1,420,006,265,123		1,076,521,955,744	
2.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20	133,610,266		-	
3. 차입금및사채	21	1,498,617,635,176		1,745,873,962,485	
4. 당기법인세부채		516,405,147,316		365,609,755,774	
5. 기타금융부채	22,23	181,182,416,161		94,350,571,980	
6. 기타유동부채	25	161,173,576,770		146,913,527,427	
7. 충당부채	26	13,372,648,975		19,540,528,946	
II. 비유동부채			3,505,312,739,432		3,017,206,697,113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20	25,238,394,790		-	
2. 차입금및사채	21	2,703,800,471,060		2,439,574,476,416	
3. 순확정급여부채	24	26,509,772,488		23,195,912,697	
4. 이연법인세부채	36	587,754,527,688		524,809,517,144	
5. 기타금융부채	22,23	43,060,201,548		14,558,572,798	

6. 기타비유동부채	25	10,557,221,128		7,735,920,277	
7. 총당부채	26	108,392,150,730		7,332,297,781	
부 채 총 계			7,296,204,039,219		6,466,016,999,469
자 본					
I.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11,489,628,164,151		9,363,112,350,552
1. 자본금	27	171,377,095,000		171,377,095,000	
2. 기타불입자본	28	880,743,872,602		478,576,150,133	
3. 이익잉여금	29	10,582,113,942,798		8,486,992,508,654	
4. 기타자본구성요소	30	(144,606,746,249)		226,166,596,765	
II. 비지배지분			765,138,897,280		37,704,819,880
자 본 총 계			12,254,767,061,431		9,400,817,170,432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9,550,971,100,650		15,866,834,169,901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 42(당)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41(전)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식	제 42(당) 기		제 41(전) 기	
I. 매출	3,31,41		15,874,510,689,910		13,223,540,873,785
II. 매출원가	37,41		12,081,876,222,814		9,956,835,878,305
III. 매출총이익			3,792,634,467,096		3,266,704,995,480
판매비와관리비	32,37,41		862,913,509,269		722,451,059,395
IV. 영업이익	3		2,929,720,957,827		2,544,253,936,085
금융수익	3,33		253,053,655,691		156,147,422,909
금융비용	3,34		273,186,322,842		241,023,186,030
지분법투자손익	12,13		284,443,693,668		71,447,129,465
기타영업외수익	3,35		213,268,096,980		232,893,826,207
기타영업외비용	3,35		322,614,040,202		276,346,028,679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		3,084,686,041,122		2,487,373,099,957
법인세비용	36		800,109,102,761		650,188,180,879
VI. 당기순이익			2,284,576,938,361		1,837,184,919,078
VII. 기타포괄손익			(428,342,968,836)		85,909,192,018
1. 후속적으로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57,569,625,822)		(2,749,643,41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4	(14,646,011,391)		(5,608,108,254)	
지분법이익잉여금	12,13	553,133,535		1,658,336,122	
해외사업환산손익		(43,476,747,966)		1,200,128,716	
2. 후속적으로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370,773,343,014)		88,658,835,434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7	12,632,613,833		(6,609,388,327)	
지분법자본변동	12,13	(29,013,393,026)		(2,207,049,932)	
파생상품평가손익	23	945,848,298		591,062,562	
해외사업환산손익		(355,338,412,119)		96,884,211,131	
VIII. 총포괄이익			1,856,233,969,525		1,923,094,111,096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2,243,875,142,823		1,835,812,632,200
비지배지분			40,701,795,538		1,372,286,878
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1,859,116,215,130		1,920,537,275,695
비지배지분			(2,882,245,605)		2,556,835,401
IX. 주당이익					
기본및희석주당이익	38		65,625		54,488

- 자본변동표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처리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연결자본변동표

제 42(당)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과 목	지배주주지분				비지배지분	총 계
	자 본 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I. 2016.01.01.(전기초)	171,377,095,000	476,522,242,395	6,739,344,145,893	137,507,761,331	30,834,830,237	7,555,586,074,856
1. 배당금의 지급 (주식 29)	-	-	(84,230,077,500)	-	(11,584,767)	(84,241,662,267)
2. 종속기업 소유지분 변동	-	2,053,907,738	-	-	2,884,114,326	4,938,022,064
3. 사업결합	-	-	-	-	1,440,624,683	1,440,624,683
4. 총포괄이익	-	-	1,831,878,440,261	88,658,835,434	2,556,835,401	1,923,094,111,096
당기순이익	-	-	1,835,812,632,200	-	1,372,286,878	1,837,184,919,078
확정급여제도의 채측정요소	-	-	(5,592,528,061)	-	(15,580,193)	(5,608,108,254)
지분법이익잉여금	-	-	1,658,336,122	-	-	1,658,336,12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	-	(6,609,388,327)	-	(6,609,388,327)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	-	(350,439,932)	-	(350,439,932)
파생상품평가이익	-	-	-	591,062,562	-	591,062,562
해외사업환산이익	-	-	-	95,027,601,131	1,200,128,716	96,227,729,847
II. 2016.12.31.(전기말)	171,377,095,000	478,576,150,133	8,486,992,508,654	226,166,596,765	37,704,819,880	9,400,817,170,432
I. 2017.01.01.(당기초)	171,377,095,000	478,576,150,133	8,486,992,508,654	226,166,596,765	37,704,819,880	9,400,817,170,432
1. 배당금의 지급 (주식 29)	-	-	(134,768,124,000)	-	(14,756,000)	(134,782,880,000)
2. 종속기업 소유지분 변동	-	204,904,996,994	-	-	730,331,079,005	935,236,075,999
3. 자기주식처분	-	197,262,725,475	-	-	-	197,262,725,475
4. 총포괄이익	-	-	2,229,889,558,144	(370,773,343,014)	(2,882,245,605)	1,856,233,969,525
당기순이익	-	-	2,243,875,142,823	-	40,701,795,538	2,284,576,938,361
확정급여제도의 채측정요소	-	-	(14,538,718,214)	-	(107,293,177)	(14,646,011,391)
지분법이익잉여금	-	-	553,133,535	-	-	553,133,535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	-	12,632,613,833	-	12,632,613,833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	-	(29,013,393,026)	-	(29,013,393,026)
파생상품평가이익	-	-	-	945,848,298	-	945,848,298
해외사업환산손실	-	-	-	(355,338,412,119)	(43,476,747,966)	(398,815,160,085)
II. 2017.12.31.(당기말)	171,377,095,000	880,743,872,602	10,582,113,942,798	(144,606,746,249)	765,138,897,280	12,254,767,061,431

## 연결 현금흐름표

제 42(당)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41(전)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과 목	제 42(당) 기		제 41(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129,011,398,101		2,700,639,428,999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3,719,321,439,300		3,073,925,305,400	
(1) 당기순이익	2,284,576,938,361		1,837,184,919,078	
(2) 조정사항	1,364,787,004,615		1,375,435,299,793	
법인세비용	800,109,102,761		650,188,180,879	

이자수익	(62,758,352,955)		(28,814,875,650)
이자비용	107,123,859,951		76,514,064,726
배당금수익	(794,570,800)		(690,201,149)
지분법투자이익	(294,237,428,967)		(89,488,666,096)
지분법투자손실	9,793,735,299		18,041,536,63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6,457,141,148)		(649,593,756)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28,345,993,258		2,032,866,464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778,494,58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손실	21,670,343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10,574,886,844)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4,376,028		-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48,923,000,000		6,329,000,000
외화환산손실	62,377,256,153		93,138,780,898
외화환산이익	(100,926,658,689)		(58,479,396,307)
파생상품평가이익	(700,741,078)		(12,258,967,885)
파생상품평가손실	42,982,149,113		565,189,932
파생상품거래이익	(3,050,694,253)		(6,580,540,000)
파생상품거래손실	5,685,584,709		7,598,903,500
유형자산처분이익	(1,387,454,845)		(401,118,659)
유형자산처분손실	11,072,968,891		20,281,471,019
유형자산손상차손	-		19,142,619,950
무형자산처분손실	24,961,000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289,243,723)		(5,331,064,833)
대손상각비	53,078,588		593,181,697
기타의대손상각비환입	(7,114,589)		(646,949,857)
감가상각비	605,950,238,878		561,225,936,027
무형자산상각비	85,212,994,043		67,924,995,337
충당부채의 전입(환입)	(5,476,055,900)		15,721,570,204
퇴직급여	42,631,245,900		37,277,569,272
장기종업원급여	1,913,628,071		2,200,807,449
(3) 운전자본의 변동	69,957,496,324		(138,694,913,471)
매출채권	(172,619,571,444)		(128,102,962,072)
기타채권	20,477,188,539		(2,570,903,758)
채고자산	(100,974,124,070)		(125,775,162,256)
기타금융자산	(13,324,227,831)		(14,027,743,913)
기타자산	36,970,778,951		(36,060,777,287)
매입채무	314,219,287,459		153,551,639,895
기타채무	(24,261,553,617)		35,301,782,151
기타금융부채	44,822,959,941		32,549,112,182
기타부채	16,717,672,403		(9,005,148,519)
순확정급여채무	(52,070,914,007)		(44,554,749,894)
2. 법인세의 납부	(590,310,041,199)		(373,285,876,401)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717,557,637,782)	(3,564,635,824,107)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62,128,712,003		531,509,845,123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454,282,386,854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3,000,000		247,854,53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40,512,840,844		639,020,000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2,005,837,211		3,094,321,295	
유형자산의 처분	2,937,892,146		10,927,987,855	
무형자산의 처분	300,000,000		-	
이자의 수취	52,361,498,981		32,124,084,940	
배당금의 수취	61,409,802,300		30,190,201,149	
파생상품의 정산	2,597,840,521		3,988,499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879,686,349,785)		(4,096,145,669,23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2,786,597,801,239		10,675,647,197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	-		11,178,676,48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1,206,738,291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4,739,816,684		125,128,199,842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		418,692,211,769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54,899,995,000		13,400,000,000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9,688,916,334		732,074,246	
유형자산의 취득	2,019,897,194,135		1,588,147,530,846	
무형자산의 취득	2,655,888,102		6,881,759,929	
투자부동산의 취득	-		19,136,013,226	
사업결합으로 인한 순현금유출	-		1,902,173,555,695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14,530,248,362		1,100,504,035,762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4,058,223,835,089		3,131,095,116,055	
단기차입금의 차입	1,919,940,373,508		2,265,614,490,418	
장기차입금의 차입	795,174,953,562		102,146,880,000	
사채의 발행	189,446,260,000		758,400,400,000	
종속기업투자의 처분	-		4,933,345,637	
파생상품거래의 정산	5,060,032,500		-	
자기주식의 처분	213,366,139,520		-	
종속기업소유지분변동	935,236,075,999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943,693,586,727)		(2,030,591,080,293)	
단기차입금의 상환	2,495,821,718,368		1,623,466,323,406	
장기차입금의 상환	18,998,112,000		49,455,039,015	
사채의 상환	200,000,000,000		190,000,000,000	
배당금의 지급	134,782,880,000		84,241,662,267	
이자의 지급	90,352,011,359		82,409,692,105	
파생상품의 정산	3,738,865,000		1,018,363,50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I+ II+ III)		(474,015,991,319)		236,507,640,654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202,944,465,224		1,942,218,655,868
V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43,716,484,875)		24,218,168,702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685,211,989,030		2,202,944,465,224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1. 일반사항

### 1-1 지배기업의 개요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1976년 3월 16일 석유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여수, 대산 및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서울본사·부산·대구·대전지점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1991년 5월30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KRX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09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롯데대산유화를 흡수합병하였으며, 2012년 12월 27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케이피케미칼을 흡수합병하고 사명을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에서 롯데케미칼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롯데물산(주)	10,718,818 주	31.27%
(주)호텔롯데	4,346,818 주	12.68%
Lotte Holdings Co., Ltd.	3,186,000 주	9.30%
기타	16,023,783 주	46.75%
계	34,275,419 주	100.00%

1-2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속한 종속기업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속한 종속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함)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회사명	결산일	업종	연결실체 지분율	비지배지분 지분율	소재지
Lott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rp.	12.31.	판매	100.00%	-	중국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Jiaxing) Co., Ltd.	12.31.	화학제조	100.00%	-	중국
Lotte Chemical (Jiaxing) Corp.	12.31.	화학제조	100.00%	-	중국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Berhad와 그 종속기업 (주1)	12.31.	화학제조	76.01%	23.99%	말레이시아 등
삼박엘에프티(주)	12.31.	화학제조	99.51%	0.49%	국내
테크항공(주)	12.31.	부품제조	100.00%	-	국내
Lotte Chemical Alabama Corp.	12.31.	화학제조	100.00%	-	미국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Hefei) Co., Ltd.	12.31.	화학제조	100.00%	-	중국
(주)케이피켄텍	12.31.	화학제조	100.00%	-	국내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12.31.	화학제조	75.01%	24.99%	파키스탄
Lotte Chemical UK Limited	12.31.	화학제조	100.00%	-	영국
Lotte Chemical Poland Sp. zo.o.	12.31.	판매	100.00%	-	폴란드
Lotte Chemical USA Corp.와 그 종속기업 (주2)	12.31.	화학제조	90.41%	9.59%	미국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Shenyang) Co., Ltd.	12.31.	화학제조	100.00%	-	중국
롯데첨단소재(주)와 그 종속기업 (주3)	12.31.	화학제조	100.00%	-	국내

(전기말)

회사명	결산일	업종	연결실체 지분율	비지배지분 지분율	소재지
Lott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rp.	12.31.	판매	100.00%	-	중국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Jiaxing) Co., Ltd.	12.31.	화학 제조	100.00%	-	중국
Lotte Chemical (Jiaxing) Corp.	12.31.	화학 제조	100.00%	-	중국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Berhad와 그 종속기업 (주1)	12.31.	화학 제조	100.00%	-	말레이시아 등
삼박엘에프티(주)	12.31.	화학 제조	99.51%	0.49%	국내
테크항공(주)	12.31.	부품 제조	100.00%	-	국내
Lotte Chemical Alabama Corp.	12.31.	화학 제조	100.00%	-	미국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Hefei) Co., Ltd.	12.31.	화학 제조	100.00%	-	중국
(주)케이피켄텍	12.31.	화학 제조	100.00%	-	국내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12.31.	화학 제조	75.01%	24.99%	파키스탄
Lotte Chemical UK Limited	12.31.	화학 제조	100.00%	-	영국
Lotte Chemical Poland Sp. zo.o.	12.31.	판매	100.00%	-	폴란드
Lotte Chemical USACorp.와 그 종속기업 (주2)	12.31.	화학 제조	100.00%	-	미국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Shenyang) Co., Ltd.	12.31.	화학 제조	100.00%	-	중국
롯데첨단소재(주)와 그 종속기업 (주3)	12.31.	화학 제조	100.00%	-	국내

(주1) 종속기업인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Berhad는 2017년 7월 11일 580,000,000주의

신주를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에 발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기주식을 고려한 지배 기업의 지분율은 100%에서 76.01%로 변경되었습니다.

(주2) 상기 언급된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Berhad의 유상증자 결과, 동 종속기업이 보

유한 Lotte Chemical USA Corp.에 대한 지분율이 40%에서 30.41%로 변경되었으며,

연결실체가 보유한 지분율 또한 100%에서 90.41%로 변경되었습니다.

(주3) 지배기업은 롯데첨단소재(주)의 지분 90% 취득시 비지배주주(삼성 SDI(주))가 보유하고 있는 롯데첨단소재(주)의 기명식 보통주식 100만주(지분율 10%)에 대하여 지배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Call 옵션)을 보유하고, 주식매도선택권(Put 옵션)을 부여하는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배기업은 동 기명식 보통주식 100만주(지분율10%)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가산하였으며 옵션행사가격(고정 금액)은 현재가치를 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주석 21 참조)

(2) 전기 중에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거나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종속기업명	사유
신규포함	롯데첨단소재(주)와 그 종속기업	신규취득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회사명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지배지분	비지배지분
Lott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rp.	54,371,271	30,658,424	47,928,674	-	37,101,021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Jiaxing) Co., Ltd.	41,617,411	11,319,136	8,674,212	-	44,262,335	-
Lotte Chemical (Jiaxing) Corp.	53,674,115	64,296,052	37,919,375	40,020,149	40,030,643	-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Berhad와 그 종속기업	1,513,859,047	1,972,341,228	223,861,833	205,319,008	3,051,801,034	5,218,400
삼박엘에프티(주)	34,556,348	23,973,448	21,833,473	2,163,802	34,532,521	-
테크항공(주)	8,367,607	11,750,097	4,641,006	15,958,867	(482,169)	-
Lotte Chemical Alabama Corp.	10,082,487	8,150,096	5,566,158	-	12,666,425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Hefei) Co., Ltd.	8,191,776	12,903,669	2,448,622	5,236,800	13,410,023	-
(주)케이피캡텍	42,923,326	12,199,034	28,067,857	844,366	26,210,137	-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127,121,205	71,524,139	94,339,864	951,349	103,354,131	-
Lotte Chemical UK Limited	174,763,881	98,599,444	227,780,310	139,634,410	(94,051,395)	-
Lotte Chemical Poland Sp. zo.o.	17,335,286	90,522	16,879,356	44,701	501,751	-
Lotte Chemical USA Corp.와 그 종속기업	122,441,137	1,935,986,718	10,429,096	696,155,068	1,351,843,691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Shenyang) Co., Ltd.	5,204,115	12,400,365	2,792,067	-	14,812,413	-
롯데첨단소재주와 그 종속기업	1,148,051,578	921,493,251	467,755,349	12,703,960	1,587,071,810	2,013,710

(전기말)

(단위: 천원)						
회사명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지배지분	비지배지분
Lott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rp.	92,534,208	23,821,723	82,414,155	-	33,941,776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Jiaxing) Co., Ltd.	39,573,334	14,071,394	11,740,435	-	41,904,293	-
Lotte Chemical (Jiaxing) Corp.	47,220,275	59,106,924	14,739,113	54,054,348	37,533,738	-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Berhad와 그 종속기업	896,717,890	1,548,882,538	170,497,841	107,033,588	2,161,980,408	6,088,591
삼박엘에프티주	28,367,974	25,541,285	19,197,153	3,306,410	31,405,696	-
테크항공주	6,367,297	11,610,233	4,754,529	15,833,484	(2,610,483)	-
Lotte Chemical Alabama Corp.	8,404,041	10,103,679	4,531,606	725,100	13,251,014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Hefei) Co., Ltd.	9,219,397	14,400,733	3,459,085	5,544,320	14,616,725	-
주케이피켄텍	35,141,615	13,526,037	22,018,284	1,002,710	25,646,658	-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122,925,585	79,291,268	82,876,210	868,947	118,471,696	-
Lotte Chemical UK Limited	132,452,931	97,340,508	314,255,759	-	(84,462,320)	-
Lotte Chemical Poland Sp. zo.o.	14,695,957	19,961	14,861,645	-	(145,727)	-
Lotte Chemical USA Corp. 와 그 종속기업	53,978,641	983,775,481	4,622,459	-	1,033,131,663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Shenyang) Co., Ltd.	5,501,173	11,320,142	143,838	-	16,677,477	-
롯데첨단소재주와 그 종속기업	899,555,308	886,653,357	444,296,628	247,462	1,339,939,342	1,725,233

(4) 당기와 전기 중 각 종속기업의 요약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회사명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비지배지분 손익	비지배지분 총포괄손익
Lott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rp.	289,344,341	4,591,443	5,159,234	5,159,234	-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Jiaxing) Co., Ltd.	77,183,723	7,089,709	4,791,307	4,791,307	-	-
Lotte Chemical (Jiaxing) Corp.	132,557,397	(2,201,343)	(2,204,096)	(2,204,096)	-	-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Berhad와 그 종속기업	2,044,940,846	280,778,950	268,918,598	309,949,214	(189,419)	(870,191)
삼박엘에프티주	96,259,296	7,432,726	6,442,200	6,567,009	-	-
테크항공주	20,162,864	2,471,148	2,072,139	2,128,314	-	-
Lotte Chemical Alabama Corp.	19,571,939	1,386,929	969,660	969,660	-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Hefei) Co., Ltd.	13,329,080	(65,148)	(405,193)	(405,193)	-	-
주케이피켄텍	175,244,354	800,817	397,819	563,479	-	-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397,748,641	8,090,012	4,428,066	4,317,457	-	-
Lotte Chemical UK Limited	357,267,673	(3,197,353)	(12,039,626)	(12,039,626)	-	-
Lotte Chemical Poland Sp. zo.o.	53,581,361	274,225	643,692	643,692	-	-
Lotte Chemical USA Corp. 와 그 종속기업	-	(8,030,671)	(14,851,519)	(14,851,519)	-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Shenyang) Co., Ltd.	547,237	(1,009,150)	(961,919)	(961,919)	-	-
롯데첨단소재(주)와 그 종속기업	2,894,156,122	332,591,758	250,951,722	247,420,945	340,131	288,478

(전 기)

(단위: 천원)						
회사명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비지배지분 손익	비지배지분 총포괄손익
Lott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rp.	298,488,417	10,685,338	7,530,459	7,530,459	-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Jiaxing) Co., Ltd.	80,961,433	11,035,452	7,840,797	7,840,797	-	-
Lotte Chemical (Jiaxing) Corp.	134,655,727	(1,636,704)	(6,544,645)	(6,544,645)	-	-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Berhad와 그 종속기업	2,285,117,299	505,865,264	377,774,853	377,013,591	195,616	407,268
삼박엘에프티㈜	77,287,625	9,195,279	6,704,767	6,659,414	-	-
테크항공㈜	19,668,012	2,983,905	1,346,294	1,384,761	-	-
Lotte Chemical Alabama Corp.	20,035,731	2,551,280	2,614,921	2,514,764	-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Hefei) Co., Ltd.	15,332,325	1,243,909	962,836	962,836	-	-
㈜케이피켄텍	141,496,595	(2,261,896)	(2,771,920)	(2,313,798)	-	-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385,418,188	3,266,506	3,588,047	3,526,509	-	-
Lotte Chemical UK Limited	273,504,078	(10,518,666)	(19,152,122)	(19,152,122)	-	-
Lotte Chemical Poland Sp. zo.o.	42,196,112	(20,068)	(331,753)	(331,616)	-	-
Lotte Chemical USA Corp.와 그 종속기업	-	(242,176)	(6,771)	(6,771)	-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Shenyang) Co., Ltd.	-	(647,896)	(577,266)	(577,266)	-	-
롯데첨단소재㈜와 그 종속기업 (주1)	1,950,761,669	239,750,037	180,976,443	172,374,084	239,262	296,192

(주1) 지배기업의 지분취득시점 이후의 재무성과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 당기와 전기 중 각 종속기업별로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소유지분율과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배당 금액 중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몫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 기)

(단위: 천원)					
회사명	비지배지분 소유지분율	누적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 귀속 당기순손익	비지배지분 귀속 총포괄손익	비지배지분 지급 배당금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Berhad와 그 종속기업 (주1)	23.99%	607,288,310	39,602,277	4,915,899	-
삼박엘에프티㈜	0.49%	169,764	32,534	33,148	14,756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24.99%	25,967,207	1,114,471	(392,903)	-
Lotte Chemical USA Corp.와 그 종속기업	9.59%	129,699,906	(387,618)	(7,778,521)	-
롯데첨단소재㈜와 그 종속기업 (주2)	-	2,013,710	340,131	340,131	-
합 계		765,138,897	40,701,796	(2,882,246)	14,756

(전 기)

(단위: 천원)					
회사명	비지배지분 소유지분율	누적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 귀속 당기순손익	비지배지분 귀속 총포괄손익	비지배지분 지급 배당금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Berhad와 그 종속기업 (주1)	-	6,088,591	195,616	407,268	-
삼박엘에프티㈜	0.49%	153,539	32,859	32,390	-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24.99%	29,737,457	904,550	1,820,984	-

롯데첨단소재(주)와 그 종속기업 (주2)	-	1,725,233	239,262	296,193	11,585
합 계		37,704,820	1,372,287	2,556,835	11,585

(주1)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Berhad와 그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재무정보입니다.

(주2) 롯데첨단소재(주)와 그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재무정보입니다.

(6) 당기 중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율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기)

(단위: 천원)					
회사명	거래전 지분율	거래후 지분율	지분대가	비지배지분증감	기타불입자본의증감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Berhad와 그 종속기업	100.00%	76.01%	935,236,076	591,974,231	343,261,845
Lotte Chemical USA Corp.와 그 종속기업	100.00%	90.41%	-	138,356,848	(138,356,848)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 회계정책

###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의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당기 연결재무제표는 2018년 2월 23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공시개선

개정 기준서는 공시개선 프로젝트의 일부이며 연결재무제표 이용자가 현금흐름 및 비현금 변동에서 발생하는 변동을 포함한 재무활동으로 인한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당기부터 동 개정사항을 적용하여 당기와 전기의 정보에 대해 주석 43에 공시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개정 기준서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의 소멸시 차감될 과세소득의 원천에 세법상 제약이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미래 과세소득을 어떻게 추정하는가에 대

한 지침을 제공하고 일부 자산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 또는 개정사항에 해당하는 자산이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2014-2016 연차개선

당기부터 연결실체가 적용한 2014-2016 연차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개정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개정): 공시규정의 범위 구분

개정 기준서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또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 중 일부)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더라도, 기준서 제1112호 문단 B10-B16을 제외한 기준서 제1112호의 다른 공시규정은 적용하여 공시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 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연결실체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7년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 중에 있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

합니다.

구분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주1)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주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주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주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주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6,546,295백만원, 매도가능금융자산 355,287백만원, 위험회피지정파생상품 1,059백만원 및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4,567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②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금융부채 5,872,039백만원 중 25,372백만원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였고, 2017회계연도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28,346백만원의 공정가치 하락을 당기손실로 인식하였습니다.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2월 31일 현재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는 대부분 만기가 짧고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이 미미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더라도 해당 금융부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③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분(주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주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주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주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연결실체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 6,547,630백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자산에 대하여 손실충당금 1,335백만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계약 식별 → ②수행의무 식별 → ③거래가격 산정

→ ④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2017년 10월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회계부서 소속직원과 외부자문사인 회계법인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고, 실무 부서의 도움을 받아 연결실체의 수익구조를 분석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제품판매 전략, 영업행태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업 관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준서 도입에 따른 변화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도입 추진 계획과 진행상황을 경영진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주요 사항 중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친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는 향후 연결실체가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실체의 수출은 직수출과 로컬수출로 구분되며, 일부 직수출의 경우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국제무역거래의 조건에 대한 해석에 따른 국제규칙(INCOTERMS 2010) 중 CFR, CIF 등의 조건을 적용하여 거래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관련 조건에 대하여 연결실체가 부담하는 해상운송을 재화의 공급과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게 됩니다. 연결실체의 경우, 해당 용역 수행에 따른 수익은 기존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판매관리비로 인식하던 해당 용역 수행에 대한 비용은 수익에 대한 매출원가로 인식하게 됩니다.

2017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무영향을 분석 중에 있으며 계정재분류를 제외한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및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자산 매각 또는 출자  
개정 기준서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매각되거나 출자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상실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간의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각이나 출자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전액 인식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매각이나 출자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투자자의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은 무기한 연기되었으나 조기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와 측정  
개정기준서는 다음의 세 가지 논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가득조건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
-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
-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의 회계처리

개정 기준서 적용 시 연결실체는 과거기간에 대한 재작성을 하지 않고 동 기준서를 적용하도록요구되나 세 가지 개정된 모든 사항을 적용하고 다른 조건이 충족될 경우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기준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정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합니다. 동 기준서는 리스의 인식, 측정, 표시, 공시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모든 리스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의 금융리스 회계처리와 유사한 단일 모델로 회계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 기준서는 리스 이용자에 대해 소액자산 리스(예: 개인 컴퓨터),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의 두 가지 인식 면제 규정을 포함합니다. 리스개시일에 리스이용자는 리스료 지급에 대한 부채(리스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며, 기초자산에 대한 리스기간동안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자산(사용권 자산)을 인식할 것입니다. 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의 이자비용과 사용권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개별적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특정 사건(즉, 리스기간의 변동,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이 발생하면 리스부채를 재측정해야 합니다. 리스이용자는 일반적으로 사용권 자산을 조정함으로써 리스부채의 재측정 금액을 인식할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현행 회계처리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리스제공자는 모든 리스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동일한 분류 원칙을 사용하여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할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에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보다 광범위한 공시를 요구합니다. 동 기준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되나 먼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리스이용자는 완전소급 또는 변형된 소급을 하여 적용하며, 동 기준서상 경과 규정은 몇가지 실무적 간편법을 허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동 기준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예정이며, 정해진 시행일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 계정대체

이 개정사항은 투자부동산의 개발 또는 건설에 대해 계정대체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투자부동산으로(에서) 용도 변경과 투자부동산 정의를 충족하게 되거나 중지되는 시점에 용도의 변경에 대해 기술합니다. 기업은 이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이후 이루어지는 용도 변경에 대해 전진 적용합니다. 기업은 그 시점의 상태를 반영하여 재분류하거나 그 시점에 보유한 부동산을 재평가합니다. 사후 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연차개선 2014-2016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최초채택 기업의 단기 면제 규정 삭제

문단 E3~E7의 최초채택기업의 단기 면제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 규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개정사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에 적용가능하지 않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개별기준 선택  
개정 기준서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할

때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그 투자를 당 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음

· 그 자체가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 기업이 보유한 종속기업의 지분에 대하여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이 선택은 (1)투자기업인 관계 기업이나 공동기업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 (2)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투자기업이 되는 시점, (3)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최초로 지배기업이 되는 시점 중 가장 나중의 시점에 각각의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함

동 개정사항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으며, 조기적용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제정)

해석서는 대가를 외화로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를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하여야 합니다. 동 제정사항을 적용시 소급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석서를 적용함에 있어 이 해석서에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산, 비용, 수익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날 이후 인식한 것 모두에 대해 전진 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① 이 해석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시작일
- ② 이 해석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서 비교정보로 표시하는 과거 보고기간의 시작일

동 해석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적용이 허용되며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제정사항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2-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특수목적기업 포함)의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게 대한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 연결실체,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과거 주주총회에서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 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ii)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의 원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2-3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발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교환일)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공정가치나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연결실체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측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기업회계기준 제 1039호나 기업회계기준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우발자산'에 따라 이후 보고일에 재측정하고 적절한 경우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지분을 취득일(즉 연결실체가 지배력을 획득한 날)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 2-4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 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

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당기순이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연결실체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투자자산의 일부로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 해당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으로 인식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당기순이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하게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실체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 2-5 공동영업에 대한 투자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입니다.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연결실체가 공동영업 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공동영업자로서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다음을 인식합니다.

- 자신의 자산.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자신의 부채. 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중 자신의 몫의 판매 수익
- 공동영업의 산출물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
- 자신의 비용.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 중 자신의 몫을 포함

연결실체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연결실체가 공동영업에 자산을 판매하거나 출자하는 것과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그것은 공동영업의 다른 당사자와의 거래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연결실체는 거래의 결과인 손익을 다른 당사자들의 지분 한도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연결실체가 공동영업과 자산의 구매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자산을 제 3자에게 재판매하기 전까지는 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 2-6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결실체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연결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관계기업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은 주석 2-4에 설명되어 있

습니다.

## 2-7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 이후 연결실체가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앞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될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는 상기에서 언급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연결실체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과 관련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합니다. 한편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다만 매각으로 인하여 연결실체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상실되는 경우 매각시점에 지분법의 적용을 중단합니다.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매각한 이후에도 연결실체의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잔여 보유분에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결실체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인식과 측정'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2-8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결실체의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1) 재화의 판매

연결실체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시점에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2)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 (3) 임대수익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인식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은 주석 2-9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4) 용역의 제공

연결실체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행된 용역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의 성격에 따라 작업수행정도의 조사,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수행한 누적용역량의 비율,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등의 제공한 용역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5) 라이선스 수수료 및 로열티수익

연결실체는 라이선스 수수료 및 로열티수익에 대해서는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 2-9 리스

리스는 리스약정일을 기준으로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 이전되는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외의 모든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1) 리스이용자

연결실체는 리스기간개시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연결채무상태표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스료는 매기말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이자비용과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주석 2-11 참고)에 따라 당해 적격자산의 일부로 자본화되는 경우를 제외한 금융원가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료는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리스에서 발생한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 계약시 리스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이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리스인센티브의 효익은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 기준이 없다면, 정액기준으로 리스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 리스제공자

연결실체는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고, 금융리스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수익은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10 외화환산

각 연결대상기업들의 개별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개별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종료일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위험회피회계정책에 대해서는 주석 2-23 참고)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결실체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자본(적절한 경우 비지배지분에 배분)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즉 연결실체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 전부의 처분,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처분, 공동약정의 지분의 부분적 처분 또는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부분적 처분 이후 보유하는 지분이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일부 처분의 경우,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외의 모든 일부 처분의 경우(즉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감소)에는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고 보고기간말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환차이는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11 차입원가

연결실체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12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연결실체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13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할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 2-14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

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 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 2-15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개별법)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 2-16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부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 (1)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수익은 채무상품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에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였을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자산이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 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자산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평가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 '금융손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3) 만기보유금융자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만기가 고정되었고 연결실체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환손익(아래 참고)과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

을 제외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되는 때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배당금은 연결실체가 배당금을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하며 보고기간 말현재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환손익은 화폐성자산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하며, 기타 외환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매도가능지분상품과,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취득원가에서 식별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5) 대여금및수취채권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단기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 (6)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손상에 대한 징후를평가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연체
- 차입자가 파산하거나 재무구조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되는 경우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뿐만 아니라 대금회수에 관한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

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범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채권과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제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각하였던 금액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될 때,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후속기간에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은손상차손을 환입하는 시점의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상되었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의 공정가치의 증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에 대해서는 후속기간에 공정가치의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있습니다.

#### (7)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수취한 대가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전체가 제거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예를 들어 연결실체가 양도자산의 일부를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거나, 잔여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잔여지분의 보유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의 기존 장부금액을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지속적 관여에 따라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거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취한 대가와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에 배분된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 2-1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

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 될 것으로 최초로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 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건 물	10~50년
구 축 물	15~50년
기 계 장 치	6~30년
차 량 운 반 구	4년~5년
공 구 와 기 구	4년~5년
비 품	4년~5년
기타의유형자산	1년~5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 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 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 식하고 있습니다.

## 2-18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 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 수에 따라 40~5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19 무형자산

###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연결실체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 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5)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무형자산 중 회원권과 사업결합으로 인식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무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산업재산권	5~10년
기타의 무형자산	4~5년
고객관계등	10~15년

## 2-20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21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비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 2-22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 (1) 부채·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가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가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 (3)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또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4)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이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 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 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부채가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 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 준서 제 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 손익인식부채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동 평가손익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5)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나)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7)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23 파생상품

연결실체는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 다수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1) 내재파생상품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는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합성계약의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합성계약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은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재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2)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 또는 회피대상위험이 외화위험인 경우에는 비파생금융상품을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및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관계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후속기간에 위험회피수단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효과적인지 여부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 (3) 공정가치위험회피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또는 행사되는 경우, 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4) 현금흐름위험회피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기타자본구성요소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재분류 된 금액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여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최초 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행사되는 경우,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계속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예상거래가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 2-24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채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2-25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서 기술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부채 등의 추정과 관련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 재무상태표

제 42(당) 기말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 41(전) 기말 2016년 12월 31일 현재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단위 : 원)

과목	주식	제 42(당) 기말		제 41(전) 기말	
자산					
I. 유동자산			5,067,992,175,734		3,692,778,095,452
1. 현금및현금성자산	41	910,110,351,183		1,433,378,148,707	
2. 단기금융상품	4	2,111,153,641,467		412,242,278,256	
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6	-		6,359,869,404	
4. 매도가능금융자산	7	100,046,195,000		20,588,275,000	
5.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 40	1,075,154,095,089		1,009,501,818,487	
6. 채고자산	9	801,270,856,803		768,057,104,495	

7. 금융리스채권	10	297,322,429		297,322,429	
8. 기타금융자산	8	12,822,275,762		8,567,413,596	
9. 기타유동자산	11	57,137,438,001		33,785,865,078	
II. 비유동자산			10,201,377,307,369		10,093,132,493,302
1. 장기금융상품	4	67,506,500,000		67,509,500,000	
2. 매도가능금융자산	7	254,144,319,419		303,128,955,375	
3. 금융리스채권	10	4,399,394,859		4,607,915,427	
4. 종속기업투자	12	5,246,539,660,141		4,945,108,860,141	
5. 관계기업투자	13	1,380,112,407,302		1,474,288,407,302	
6. 공동기업투자	14	771,940,181,143		731,268,186,143	
7. 유형자산	15	2,306,016,105,247		2,401,869,735,877	
8. 투자부동산	16	98,854,230,921		83,483,995,082	
9. 무형자산	17	21,471,890,752		21,847,347,121	
10. 기타금융자산	8	47,351,617,585		56,211,390,834	
11. 기타비유동자산	11	3,041,000,000		3,808,200,000	
자 산 총 계			15,269,369,483,103		13,785,910,588,754
부 채					
I. 유동부채			2,794,813,889,570		2,474,068,374,787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 18, 40	872,349,182,446		609,029,297,018	
2. 차입금및사채	20	1,273,498,527,281		1,372,036,169,313	
3. 당기법인세부채		460,134,030,812		338,541,903,254	
4. 기타금융부채	2, 21	58,177,913,426		39,047,028,735	
5. 기타유동부채	2, 24	117,310,977,305		96,594,662,267	
6. 충당부채	25	13,343,258,300		18,819,314,200	
II. 비유동부채			2,097,274,334,094		2,625,976,764,989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19, 43	25,238,394,790		-	
2. 차입금및사채	20	1,846,142,232,895		2,400,388,428,576	
3. 순확정급여부채	23	16,800,653,312		14,506,403,768	
4. 이연법인세부채	35	135,961,187,322		156,293,913,979	
5. 기타금융부채	21	59,933,600,916		44,942,086,915	
6. 기타비유동부채	24	8,539,176,500		7,684,245,604	
7. 충당부채	25	4,659,088,359		2,161,686,147	
부 채 총 계			4,892,088,223,664		5,100,045,139,776
자 본					
I. 자본금	26	171,377,095,000		171,377,095,000	
II. 기타불입자본	27	968,318,556,590		771,055,831,115	
III. 이익잉여금	28	9,211,371,437,921		7,730,796,464,233	
IV. 기타자본구성요소	29	26,214,169,928		12,636,058,630	
자 본 총 계			10,377,281,259,439		8,685,865,448,978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5,269,369,483,103		13,785,910,588,754

### 포괄손익계산서

제 42(당)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41(전)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단위 : 원)

과목	주석	제 42(당) 기		제 41(전) 기	
I. 매출	30,40		10,149,509,820,365		8,256,999,556,854
II. 매출원가	36,40		7,350,278,466,239		6,021,939,131,321
III. 매출총이익			2,799,231,354,126		2,235,060,425,533
판매비와관리비	31,36		432,647,011,682		377,991,807,395
IV. 영업이익			2,366,584,342,444		1,857,068,618,138
금융수익	32		174,693,920,041		129,990,803,188
금융비용	33		210,089,873,536		194,966,594,274
기타영업외수익	34		229,714,219,710		193,798,710,564
기타영업외비용	34		335,478,699,807		199,205,197,975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225,423,908,852		1,786,686,339,641
법인세비용	35		594,199,078,500		482,560,411,824
VI. 당기순이익			1,631,224,830,352		1,304,125,927,817
VII. 기타포괄손익			(2,303,621,366)		(5,344,846,887)
1. 후속적으로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5,881,732,664)		673,534,28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3	(20,952,153,910)		888,567,656	
법인세효과	35	5,070,421,246		(215,033,373)	
2. 후속적으로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13,578,111,298		(6,018,381,17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7	18,234,551,956		(8,719,582,757)	
파생상품평가손익	22	1,252,661,761		779,765,913	
법인세효과	35	(5,909,102,419)		1,921,435,674	
VIII. 총포괄이익			1,628,921,208,986		1,298,781,080,930
IX. 주당이익					
기본및희석주당이익	37		47,707		38,707

## 자 본 변 동 표

제 42(당)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41(전)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단위 : 원)

과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총계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잉여금		매도가능금융 자산평가손익	파생상품 평가손익	
I. 2016.01.01.(전기초)	171,377,095,000	22,913,227,871	748,142,603,244	6,510,227,079,633	20,110,736,888	(1,456,297,088)	7,471,314,445,548
1. 배당금의 지급 (주식 28)	-	-	-	(84,230,077,500)	-	-	(84,230,077,500)
2. 총포괄이익	-	-	-	1,304,799,462,100	(6,609,443,732)	591,062,562	1,298,781,080,930
당기순이익	-	-	-	1,304,125,927,817	-	-	1,304,125,927,817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673,534,283	-	-	673,534,283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	-	-	(6,609,443,732)	-	(6,609,443,732)
과생상품평가손익	-	-	-	-	-	591,062,562	591,062,562
II. 2016.12.31.(전기말)	171,377,095,000	22,913,227,871	748,142,603,244	7,730,796,464,233	13,501,293,156	(865,234,526)	8,685,865,448,978
I. 2017.01.01.(당기초)	171,377,095,000	22,913,227,871	748,142,603,244	7,730,796,464,233	13,501,293,156	(865,234,526)	8,685,865,448,978
1. 배당금의 지급 (주식 28)	-	-	-	(134,768,124,000)	-	-	(134,768,124,000)
2. 자기주식처분	-	-	197,262,725,475	-	-	-	197,262,725,475
3. 총포괄이익	-	-	-	1,615,343,097,688	12,632,263,000	945,848,298	1,628,921,208,986
당기순이익	-	-	-	1,631,224,830,352	-	-	1,631,224,830,352
확정급여제도 채적정요소	-	-	-	(15,881,732,664)	-	-	(15,881,732,664)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	-	-	12,632,263,000	-	12,632,263,000
과생상품평가손익	-	-	-	-	-	945,848,298	945,848,298
II. 2017.12.31.(당기말)	171,377,095,000	22,913,227,871	945,405,328,719	9,211,371,437,921	26,133,556,156	80,613,772	10,377,281,259,439

현금흐름표

제 42(당)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41(전)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42(당) 기	제 41(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331,524,130,017	1,850,223,638,386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2,841,405,902,834	2,160,472,298,344
(1) 당기순이익	1,631,224,830,352	1,304,125,927,817
(2) 조정사항	1,119,211,162,893	942,415,249,220
법인세비용	594,199,078,500	482,560,411,824
이자수익	(37,085,956,902)	(23,147,471,932)
이자비용	77,101,720,154	65,959,734,830
배당금수익	(95,389,529,290)	(30,189,741,149)
외화환산손실	29,922,319,377	62,867,140,912
외화환산이익	(64,896,740,241)	(36,342,142,438)
과생상품평가손실	42,982,149,113	565,189,932
과생상품평가이익	(700,741,078)	(12,258,967,885)
과생상품거래손실	5,685,584,709	7,598,903,500
과생상품거래이익	(3,050,694,253)	(6,580,540,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	(159,133,176)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평가손실	25,238,394,790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10,574,886,844)	-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48,923,000,000		6,329,000,000	
종속기업투자손상차손	-		13,949,000,000	
종속기업투자손상차손환입	(11,425,000,000)		(9,085,213,001)	
관계기업투자손상차손	94,176,000,000		-	
공동기업투자손상차손	14,228,000,000		17,699,543,214	
유형자산처분이익	(1,286,475,175)		(42,444,818)	
유형자산처분손실	624,023,174		6,234,239,539	
유형자산손상차손	-		19,142,619,950	
무형자산처분손실	24,961,000		-	
제고자산평가손실(환입)	308,000,000		(4,979,590,685)	
대손상각비(환입)	(7,294,271)		381,287,161	
기타의대손상각비(환입)	8,529,964,811		(20,394,586,102)	
감가상각비	378,796,198,687		360,427,597,567	
무형자산상각비	1,494,823,369		1,661,236,481	
퇴직급여	24,976,277,667		23,310,970,109	
장기종업원급여	1,894,506,696		2,197,463,187	
충당부채의 전입(환입)	(5,476,055,900)		14,710,742,200	
(3) 운전자본의 변동	90,969,444,389		(86,068,878,693)	
매출채권	(82,025,779,241)		(167,087,792,196)	
기타채권	(17,355,664,591)		(14,828,236,325)	
제고자산	(33,521,752,308)		(64,901,019,441)	
기타자산	(1,616,855,556)		(131,789,530)	
매입채무	212,070,396,479		139,716,017,886	
기타채무	34,503,687,290		29,703,954,897	
기타금융부채	1,601,567,654		16,176,426,793	
기타부채	20,411,434,582		6,189,594,303	
순확정급여부채	(43,097,589,920)		(30,906,035,080)	
2. 법인세의 납부	(509,881,772,817)		(310,248,659,958)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247,738,732,925)		(3,078,131,390,654)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67,491,813,959		523,259,349,246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454,455,669,658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3,000,000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1,734,389,294		2,695,151,508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40,512,840,844		639,020,000	
유형자산의 처분	1,553,371,276		7,793,420,340	
무형자산의 처분	300,000,000		-	
이자의 수취	27,998,683,255		27,486,346,591	
배당금의 수취	95,389,529,290		30,189,741,149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415,230,546,884)		(3,601,390,739,90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1,778,911,363,211		-	
기타금융자산의 취득	8,864,772,700		585,905,259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	-		6,200,736,228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4,739,816,684		125,119,150,071	
유형자산의 취득	276,864,471,289		364,123,698,770	

투자부동산의 취득	-		524,885,226	
무형자산의 취득	944,328,000		4,343,500,000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290,005,800,000		2,668,400,652,577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		418,692,211,769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54,899,995,000		13,400,000,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87,820,596,837)		1,226,059,224,035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311,557,132,397		3,129,232,496,332	
단기차입금의 차입	1,903,684,700,377		2,268,685,216,332	
장기차입금의 차입	-		102,146,880,000	
자기주식의 처분	213,366,139,520		-	
사채의 발행	189,446,260,000		758,400,400,000	
과생상품거래의 정산	5,060,032,500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899,377,729,234)		(1,903,173,272,297)	
단기차입금의 상환	2,489,813,448,544		1,554,184,921,805	
사채 상환	200,000,000,000		190,000,000,000	
이자의 지급	71,057,291,690		73,739,909,492	
배당금의 지급	134,768,124,000		84,230,077,500	
과생상품거래의 정산	3,738,865,000		1,018,363,50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I + II + III)		(504,035,199,745)		(1,848,528,233)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433,378,148,707		1,411,293,983,854
V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 환율변동효과		(19,232,597,779)		23,932,693,086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910,110,351,183		1,433,378,148,707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42기 2017년 01월 01일 부터 제 41기 2016년 01월 0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2016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18년 03월 19일 처분확정일 2017년 03월 24일

(단위: 천원)			
과 목	제 42(당) 기		제 41(전) 기
1. 미처분이익잉여금		1,617,543,008	1,307,111,513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199,910		2,312,051
보험수리적손익	(15,881,732)		673,534
당기순이익	1,631,224,830		1,304,125,928
2.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20,000,000	21,333,333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20,000,000		21,333,333
합 계		1,637,543,008	1,328,444,846
3. 이익잉여금처분액		1,635,452,018	1,326,244,936
이익준비금	13,860,118		13,476,812
사업확장적립금	1,261,700,000		1,178,000,000
현금배당 (주당배당금(율): 당기 10,500원(210%) 전기 4,000원(80%))	359,891,900		134,768,124

4.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090,990		2,199,910
-----------------	--	-----------	--	-----------

##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1. 회사의 개요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76년 3월 16일에 설립되어 석유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여수, 대산 및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서울본사·부산·대구·대전지점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91년 5월 30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KRX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2009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롯데대산유화를 흡수합병하였으며, 2012년 12월 27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케이피케미칼을 흡수합병하고 사명을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에서 롯데케미칼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소유주식수	지 분 율
롯데물산(주)	10,718,818 주	31.27%
(주)호텔롯데	4,346,818 주	12.68%
Lotte Holdings Co., Ltd.	3,186,000 주	9.30%
기 타	16,023,783 주	46.75%
계	34,275,419 주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 회계정책

####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당기 재무제표는 2018년 2월 23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공시개선

개정 기준서는 공시개선 프로젝트의 일부이며 재무제표 이용자가 현금흐름 및 비현금 변동에서 발생하는 변동을 포함한 재무활동으로 인한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부터 동 개정사항을 적용하여 당기와 전기의 정보에 대해 주석 42에 공시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개정 기준서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의 소멸시 차감될 과세소득의 원천에 세법상 제약이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미래 과세소득을 어떻게 추정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일부 자산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 또는 개정사항에 해당하는 자산이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2014-2016 연차개선

당기부터 당사가 적용한 2014-2016 연차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개정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개정): 공시규정의 범위 구분

개정 기준서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또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 중 일부)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더라도, 기준서 제1112호 문단 B10-B16을 제외한 기준서 제1112호의 다른 공시규정은 적용하여 공시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 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당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7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 중에 있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당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구분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주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주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주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주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주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4,227,730백만원, 매도가능금융자산 354,191백만원 및 위험회피지정파생상품 1,059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②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금융부채 4,135,340백만원 중 25,238백만원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였고, 2017회계연도 중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25,238백만원의 공정가치 하락을 당기손실로 인식하였습니다.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2월 31일 현재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는 대부분 만기가 짧고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이 미미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더라도 해당 금융부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③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분(주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주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주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주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당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 4,255,422백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자산에 대하여 손실충당금 27,692백만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계약 식별 → ②수행의무 식별 → ③거래가격 산정 → ④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2017년 10월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회계부서 소속직원과 외자문사인 회계법인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고, 실무 부서의 도움을 받아 당사의 수익구조를 분석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제품판매 전략, 영업행태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업 관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준서 도입에 따른 변화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도입 추진 계획과 진행상황을 경영진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주요 사항 중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친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는 향후 당사가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수행의무의 식별

당사의 수출은 직수출과 로컬수출로 구분되며, 일부 직수출의 경우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국제무역거래의 조건에 대한 해석에 따른 국제규칙(INCOTERMS 2010) 중 CFR, CIF 등의 조건을 적용하여 거래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관련 조건에 대하여 당사가 부담하는 해상운송을 재화의 공급과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게 됩니다. 당사의 경우, 해당 용역 수행에 따른 수익은 기존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판매관리비로 인식하던 해당 용역 수행에 대한 비용은 수익에 대한 매출원가로 인식하게 됩니다.

2017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무영향을 분석 중에 있으며 계정재분류를 제외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및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자산 매각 또는 출자

개정 기준서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매각되거나 출자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상실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간의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각이나 출자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전액 인식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매각이나 출자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투자자의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은 무기한 연기되었으나 조기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와 측정  
개정기준서는 다음의 세 가지 논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가득조건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
-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
-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의 회계처리

개정 기준서 적용 시 당사는 과거기간에 대한 재작성을 하지 않고 동 기준서를 적용하도록요구되나 세 가지 개정된 모든 사항을 적용하고 다른 조건이 충족될 경우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기준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정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합니다. 동 기준서는 리스의 인식, 측정, 표시, 공시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모든 리스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의 금융리스 회계처리와 유사한 단일 모델로 회계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 기준서는 리스 이용자에 대해 소액자산 리스(예: 개인 컴퓨터),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의 두 가지 인식 면제 규정을 포함합니다. 리스개시일에 리스이용자는 리스료 지급에 대한 부채(리스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며, 기초자산에 대한 리스기간동안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자산(사용권 자산)을 인식할 것입니다. 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의 이자비용과 사용권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개별적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특정 사건(즉, 리스기간의 변동,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이 발생하면 리스부채를 재측정해야 합니다. 리스이용자는 일반적으로 사용권 자산을 조정함으로써 리스부채의 재측정 금액을 인식할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현행 회계처리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변동하지 않았습니디. 리스제공자는 모든 리스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동일한 분류 원칙을 사용하여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할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에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보다 광범위한 공시를 요구합니다. 동 기준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되나 먼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리스이용자는 완전소급 또는 변형된 소급을 하여 적용하며, 동 기준서상 경과 규정은 몇가지 실무적 간편법을 허용합니다. 당사는 동 기준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예정이며, 정해진 시행일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 계정대체

이 개정사항은 투자부동산의 개발 또는 건설에 대해 계정대체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투자부동산으로(에서) 용도 변경과 투자부동산 정의를 충족하게 되거나 중지되는 시점에 용도의 변경에 대해 기술합니다. 기업은 이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이후 이루어지는 용도 변경에 대해 전진 적용합니다. 기업은 그 시점의 상태를 반영하여 재분류하거나 그 시점에 보유한 부동산을 재평가합니다. 사후 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연차개선 2014-2016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최초채택 기업의 단기 면제 규정 삭제

문단 E3~E7의 최초채택기업의 단기 면제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 규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개정사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에 적용가능하지 않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개별기준 선택

개정 기준서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할 때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그 투자를 당 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음
- 그 자체가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 기업이 보유한 종속기업의 지분에 대하여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이 선택은 (1)투자기업인 관계 기업이나 공동기업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 (2)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투자기업이 되는 시점, (3)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최초로 지배기업이 되는 시점 중 가장 나중의 시점에 각각의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함

동 개정사항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으며, 조기적용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제정)

해석서는 대가를 외화로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를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하여야 합니다. 동 제정사항을 적용시 소급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석서를 적용함에 있어 이 해석서에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산, 비용, 수익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날 이후 인식한 것 모두에 대해 전진 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① 이 해석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시작일
- ② 이 해석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서 비교정보로 표시하는 과거 보고기간의 시작일

동 해석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적용이 허용되며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제정사항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 수익인식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당사의 활동별 수익인식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당사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시점에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3) 임대수익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인식에 대한 당사의 회계정책은 주석 2-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 용역의 제공

당사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행된 용역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의 성격에 따라 작업수행정도의 조사, 총예상 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수행한 누적용역량의 비율,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등의 제공한 용역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5) 라이선스 수수료 및 로열티수익

당사는 라이선스 수수료 및 로열티수익에 대해서는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리스

리스는 리스약정일을 기준으로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 이전되는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외의 모든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리스이용자

당사는 리스기간개시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스료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이자비용과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에 대해서 당해 적격자산의 일부로 자본화되는 경우를 제외한 금융원가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는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로, 운용리스료는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리스에서 발생한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 계약시 리스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이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리스인센티브의 효익은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 기준이 없다면, 정액기준으로

리스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 리스제공자

당사는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고, 금융리스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수익은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4 외화환산

당사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당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종료일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위험회피회계정책에 대해서는 주석 2-17 참고)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 2-5 차입원가

당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6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

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 2-7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

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당사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개별법)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 2-9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부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 (1)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적절하다면) 그 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수익은 채무상품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영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에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였을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자산이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자산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평가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포괄손익계산서상 '금융손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3) 만기보유금융자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만기가 고정되었고 당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환손익(아래 참고)과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을 제외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되는 때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배당금은 당사가 배당금을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하며 보고기간말현재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환손익은 화폐성자산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하며, 기타 외환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매도가능지분상품과,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매 보고기간말에 취득원가에서 식별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5) 대여금및수취채권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단기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 (6)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에 손상에 대한 징후를평가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연체
- 차입자가 파산하거나 재무구조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되는 경우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뿐만 아니라 대금회수에 관한 당사의 과거 경험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범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채권과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제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각하였던 금액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될 때,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후속기간에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은손상차손을 환입하는 시점의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상되었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의 공정가치의 증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에 대해서는 후속기간에 공정가치의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있습니다.

#### (7)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수취한 대가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전체가 제거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예를 들어 당사가 양도자산의 일부를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거나, 잔여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잔여지분의 보유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

의 기존 장부금액을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지속적 관여에 따라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거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취한 대가와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에 배분된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 2-10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건 물	10~50년
구 축 물	15~40년
기 계 장 치	7~15년
차 량 운 반 구	4년
비 품	4년
공 구 와 기 구	4년
기타의유형자산	1~5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 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5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13 무형자산

###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당사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 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3)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 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4)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무형자산 중 회원권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무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산업재산권	5~10년
기타의 무형자산	4~5년

## 2-14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 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15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

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비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 2-16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 (1) 부채·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 (3)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또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4)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이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부채가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부채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동 평가손익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5)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나)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7)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17 파생상품

당사는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 다수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

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1) 내재파생상품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는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합성계약의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합성계약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은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재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2) 위험회피회계

당사는 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 또는 회피대상위험이 외화위험인 경우에는 비파생금융상품을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및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관계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후속기간에 위험회피수단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지 여부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 (3) 공정가치위험회피

당사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또는 행사되는 경우, 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4) 현금흐름위험회피

당사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재분류된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여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최초 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행사되는 경우,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계속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예상거래가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 2-18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2-19 현금배당

당사는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당사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 2-20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서 기술된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부채 등의 추정과 관련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 2-21 전기 재무제표의 계정재분류

당사는 당기 재무제표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비교공시된 전기 재무제표의 일부 계정과목을 당기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에 따라 재분류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분류는 전기에 보고된 순이익이나 전기말에 보고된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제 42 기	제 41 기
주당배당금 (원)	10,500	4,000
배당총액 (원)	359,891,899,500	134,768,124,000
시가배당율 (%)	2.89	1.14.

※ 시가배당율 산정시 시가는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 전 과거 1주일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주가를 사용 하였음.

※ 상세한 재무제표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추후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철수	1956.09.28	사외이사	해당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김윤하	1957.04.09	사외이사	해당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박용석	1955.02.10	사외이사	해당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조 석	1957.09.27	사외이사	해당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임병연	1964.09.27	기타 비상무이사	해당없음	이사회
총 ( 5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김철수	-	前. 관세청 차장 前. 부산세관 관장	해당사항 없음
김윤하	-	前. 금강원일반은행검사국 국장	해당사항 없음
박용석	現.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前. 대검찰청 차장 前. 법무연수원장	해당사항 없음
조 석	-	前.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前. 지식경제부 제2차관	해당사항 없음
임병연	現. 롯데지주가치경영실장	前. 케이피케미칼기획부문장	해당사항 없음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철수	1956.09.28	사외이사	해당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김윤하	1957.04.09	사외이사	해당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철수	-	前. 관세청 차장 前. 부산세관 관장	해당사항 없음
김윤하	-	前. 금강원일반은행검사국 국장	해당사항 없음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7( 4 )	9( 5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390억원	390억원

※ 기타 참고사항

- 1) 이사의 수 : 상기 이사의 수는 등기이사의 수임
- 2)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등기이사 9명 및 비등기임원에 대한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임

※ 참고사항

"해당사실이 없음"